

[사법농단 ISSUE PAPER ⑥]

#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2018. 7. 9. (월)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 <목차>

### **1. 사안의 개요**

###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가. 전교조 범의노조 사건과 관련한 문건 개괄

나. 문건별 내용

### **3. 사법농단의 실태 - 김영한 비망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 김영한 비망록에서 확인되는 전교조 탄압 및 재판개입

나. 김영한 비망록에 조응하는 법원행정처 시나리오 및 실제

결과

### **4. 조사보고서의 한계와 추가수사 필요성**

#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 재판거래 의혹

### 1. 사안의 개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에 의하여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에서 재판 거래 및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다. ①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②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으로 명명된 고 김형근 교사 사건, ③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이 문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앞의 두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작성된 문건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술되고 있어 재판 거래 및 재판 개입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법외노조 사건의 경우 사법부가 이 사건을 매개로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흔적을 이미 숨길 수 없는 상태이다.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쥔 주요사건”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대법원의 결정 방향 및 결정 시기, 후속조치를 제시하는 문건을 생산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출발은 2013. 10. 24.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이다(이하 ‘법외노조통보처분’). 전교조가 같은 날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쟁송이 시작되었다. 크게 ①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사건, ②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효력정지 사건(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임시처분을 구하는 소송), ③ 재판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소송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내용	상황
2013. 10. 24	고용노동부장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법외 노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 제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2013. 11. 1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효력정지 인용(서울행정법원 2013. 11. 13.자 2013아3353 결정, <u>1차 효력정지 결정</u> ) :관여법관 판사 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	법내 노조
2013. 11. 21	고용노동부장관,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항고	
2013. 12. 26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고용노동부장관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자 2013루1179결정) :관여법관 민중기(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안종화	
2014. 6. 19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청구기각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u>1심 본안 전교조 패소</u> ) :관여법관 판사 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	법외 노조
2014. 6. 23	전교조, 항소	
2014. 7. 10	전교조, 항소심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2014. 7. 22.	전교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내 노조
2014. 9. 19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효력정지 인용(서울고등법원 2014. 9. 19.자 2014아366 결정, <u>2차 효력정지 결정</u> ),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울고등법원 2014. 9. 19.자 2014아413 결정) :관여법관 판사 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현종, 판사 김관용	
2014. 9. 30	고용노동부,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재항고	
2015. 5. 28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21 등 결정)	
2015. 6. 2	대법원 제1부,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항고 인용, 서울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대법원 2015. 6. 2.자 2014무548 결정) :관여대법관 고영한(주심),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	

2015. 11. 16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효력정지결정(서울고등법원 2015. 11. 16.자 2015아328 결정, <b>3차 효력정지 결정</b> ) :관여법관 판사 김명수(재판장),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법내 노조
2016. 1. 21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b>2심 본안 전교조 패소</b> ) :관여법관 판사 황병하(재판장), 판사 유현중, 판사 김관용	법외 노조
2016. 2. 1	전교조, 상고(대법원 특별3부 계속 중, 2016두32992호)	
2016. 2. 1	전교조, 상고심에 효력정지 신청(대법원 특별 3부 계속 중, 2016아1011호)	

다시 본안 사건과 효력정지 사건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p>○ 본안 사건(원고: 전교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사건명: 법외노조통보 처분취소)의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심: 2013. 10. 24. 소 제기 → 2014. 6. 19. 원고 패(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 원고 2014. 6. 23. 항소</li> <li>- 2심: 2016. 1. 21.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 원고 2016. 2. 1. 상고</li> <li>- 3심: 현재 특별3부 계속중(대법원 2016두32992호)</li> </ul>
<p>○ 효력정지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심 본안에 부수: 2013. 10. 24. 본안 소 제기와 동시에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 → 인용(서울행정법원 2013. 11. 13.자 2013아3353 결정, <b>1차 효력정지 결정</b>) → 고용노동부가 항고 → 기각(서울고등법원 2013. 12. 26.자 2013루1179결정)</li> <li>- 2심 본안에 부수: 2014. 7. 10.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 → 인용(서울고등법원 2014. 9. 19.자 2014아366결정, <b>2차 효력정지 결정</b>):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 → 위 결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재항고/ 대법원은 재항고 인용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대법원 2015. 6. 2.자 2014무548 결정): 헌법재판소가</li> </ul>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2015. 5. 28. 합헌 결정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효력정지사유는 없다는 이유

→ 서울고등법원(환송심)에서 다시 효력정지신청을 인용(서울고등법원 2015. 11. 16.자 2015아328 결정, **3차 효력정지 결정**) : 현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부분 외에도 다툼의 쟁점이 상당수 남아 있어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

- **3심 본안에 부수**: 2016. 2. 1.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2016아1011호로 계속 중)

3차 보고서에서 특히 문제된 부분은 바로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인용결정을 파기환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환송심)에서 다른 이유를 들며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전교조는 2심 본안에서 패소함으로써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되었다. 전교조는 상고와 동시에 다시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2년이 넘도록 결정을 지체하고 있어 전교조는 2심 본안 판결 선고시인 2016. 1. 21.부터 현재까지 계속 법외노조 상태에 있다.

## 2.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 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한 문건 개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 중 오로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만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문건이 있다. 2014. 12. 3. 작성·보고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151]**’<sup>1)</sup>이 그것이다. 항소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된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불복하여 재항고심이 계류 중이었던 시기, 대법원 결정 방향 및 시기를 제안하고 대법원 결정의 파급 효과와 이후 대응을 분석하고 있는 문건이다. 특별조

1) 3차 보고서 기재 방식에 따름. 이하 같다.

사단이 열지 못했다고 밝힌 2014. 12. 3. 작성된 ‘전교조 집행정지 취소+1 [311]’은 위 [151] 문건과 유사한 내용의 문건으로 보인다(3차 보고서 166쪽 참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청와대의 관심사건으로 언급하며 대법원의 효력정지 재향고심의 처리 방향과 결정 시기를 검토하는 문건으로는 ▲ 2015. 2. 8. 작성·보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 2015. 3. 12. 작성·보고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6]’, ▲ 2015. 4. 12. 작성·보고된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152, 300, 304]’가 있다.

법외노조 효력정지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를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언급한 문건으로는, 2015. 7. 27.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sup>2)</sup>, 2015. 7. 28. 작성·보고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2015. 7. 31. 작성·보고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등이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소송의 경과와 문건 작성 시기를 표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법원행정처 문건은 파란색 표시).

본안 사건 및 기타	효력정지 사건 및 관련 문건
2013. 10. 24.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 제기	2013. 10. 24. 전교조 효력정지신청 2013. 11. 13. 효력정지 인용 결정(서울행정 2013아3353) 2013. 11. 21. 고용노동부장관 항고 2013. 12. 26. 고용노동부장관 항고기각 결정 (서울고등 2013루1179)
2014. 6. 19. 전교조 패소 (서울행정 2013구합26309)	

2) 3차 보고서에서는 문건 명을 ‘현안 관련 말씀 자료’로 기재하고 있으나, 보고서 인용 파일 추가 공개 시 파일명은 ‘과거왜곡의 광정’이다

<p>2014. 6. 23. 전교조 항소</p> <p>2013. 7. 22. 전교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p> <p>2014. 9. 1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서울고등 2014아413)</p>	<p>2014. 7. 10. 전교조 효력정지신청</p> <p>2014. 9. 19. 전교조 효력정지 인용 결정 (서울고등 2014아366)</p> <p>2014. 9. 30. 고용노동부장관 재항고</p>
<p>2014. 12. 19. 통진당 해산결정(2013헌다1)</p>	<p>2014. 12. 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151]</p> <p>2014. 12. 3. 전교조 집행정지 취소+1 [311]</p>
<p>2015. 5. 28. 합헌결정(헌재2013헌마671등)</p>	<p>2015. 2. 8.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p> <p>2015. 3. 12.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6]</p> <p>2015. 4. 12. '성완중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152, 300, 304]</p>
<p>2016. 1. 21. 항소기각(서울고등 2014누54228)</p>	<p>2015. 6. 2. 효력정지 파기환송 결정 (재항고인용, 대법원 2014무548)</p> <p>2015. 7. 23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p> <p>2015. 7. 28.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p> <p>2015. 7. 3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p> <p>2015. 11. 16. 환송심 효력정지 인용(서울고등 2015아328)</p>
<p>2016. 2. 1. 전교조 상고(대법원 2016두32992)</p>	<p>2016. 2. 18. 전교조 효력정지신청</p>



나. 문건별 내용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151]

정다주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2014. 12. 3. 보고한 문건이다. 그 내용을 분설하여 살펴보면,

①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과 관련한 BH의 입장을 검토하고, 대법원의 추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결정 후의 청와대 입장을 ‘크게 불만을 표시’,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사법 관련 최대한 현안으로 취급’으로 분석하면서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에 견제·방해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다. [검토] 재항고 인용 결정 ⇨ 양측에 원원의 결과가 될 것임

		BH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손해
재항고 인용 결정 시	전교조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상고법원	- 단순 사안 ⇨ 별 영향 없음	- 최대 현안 ⇨ 상당한 이득

[151] 2쪽 참고

② 재항고 기각과 인용의 각 득실을 분석하였다. 재항고 기각은 양측(BH 및 대법원)에 모두 손해가 될 것이고, 재항고 인용은 양측에 모두 이득인 원원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③ 결정 시점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을 가장 극적인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정 시점은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 즉 대법원이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거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선고 시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④ 대법원 결정에 따른 반발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사·재판 중인 의원 수가 ‘야당 34 대 여당 5’라며, 결국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강한 비판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진보 성향 언론 역시 관심이 분산되어 거센 비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⑤ 본안사건 담당 판사의 인사교체시점과 결부시켜 본안사건의 결정시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안사건의 결론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해당 재판장(민중기 수석부장판사) 교체도 염려에 두었다.

⑥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본안사건의 판단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 위 문건에서는 본안의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되,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대법원의 재향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본안사건의 인용 여부에 따른 파장까지 분석하고 있다.

- 재판장이 교체될 경우 본안에 관한 화해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가능 ⇨ 사회적 이슈화된 문제의 대승적 해결 시도 이미지 과시
- '최교조는 문제가 된 해직 노조원 9명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하여 법내 노조로서 요건을 충족한 후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와 같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조정안 제시
- 만일 결국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 결정문에 결정 이유가 기재되는 경우 더욱 그러할 것임
- 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실증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오히려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 교정 기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151] 7쪽

- ⑦ 재항고 인용을 전제로 이에 대한 BH의 반대급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항고 인용결정의 대가로 협조요청 사항, 즉 BH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원세훈 항소심 사건 선고 하루 전인 2015. 2. 8. 정다주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원세훈 항소심 사건의 선고결과에 따른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한 문건이다.

② 전교조 범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

- 전교조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 ⇒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한 것으로 입장 정리
- 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 +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

③ 본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

-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여 만일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58] 8쪽

이 문건에서, 항소심에서 원세훈 사건이 파기되고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되는 경우에, BH·여권(與圈)에 대응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전교조 범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사건 사법 현안 신속 처리를 제시하고 있다. 범외노조 사건은 BH가 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리하였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와 함께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6]

정다주 심의관이 2015. 2.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전보된 후임에도 임종헌 당시 기조실장의 지시로 같은 해 3. 15. 작성·보고한 문건이다. 2015. 3. 12.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문건이다.

■ [착안점③] 주요 사건 처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검찰권 적절한 견제 vs. 정권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라는 틀 속에서 사법부가 적정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히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BH의 오해를 살 필요 없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함 ⇨ 관련 사건 처리 시 진의가 충분히 설명·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공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하여야 함
- 관심 사안의 신속 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끝]

[295] 8쪽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사정을 강화할 경우 등에 있어 대응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주요 사건 처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심 사안의 신속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 ‘성완중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152, 300, 304]

박상언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5. 4. 12. 작성·보고한 문건이다. 2015. 4. 9. ‘성완중 리스트’가 공개되자 이 리스트의 정치적 의미·정국에의 영향 및 사법부에 미칠 영향 예측을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건이다.



● 관심 사안의 적절한 처리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 등

[152] 17쪽

대법원은 당시 정권이 ‘성완중 리스트’의 등장으로 국정 장악력 및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법부의 영향력 저하되고 ‘상고 법원 등 이슈’가 국정 이슈에서 후순위화 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BH와 여권의 국정장악력 상실로 인한 진공 상태를 활용하여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동시에, BH와 입법부에 대한 협조 및 우호관계의 유지 방안 중 하나로,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관심 사안”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그 예시로 들고 있다.

-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앞서 설명한 문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 이전 그 대법원 결정을 청와대와의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검토인 반면, 위 문건들은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 이후 그 대법원 결정을 사법부가 정부 운영에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내세우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의 시작은 정다주 판사가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2015. 7. 27. 작성·보고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이다. 이 문건은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으며, 구체적인 판결 사례들을 모아놓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은 당시 정부의 교육 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한 대법원의 대표적인 성과로 적시되어 있다. 2015. 7. 31. 작성·보고된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도 같은 내용이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은 시진국 심의관이 기조실 심의관들이 각각 작성한 부분을 취합하여 완성한 문서로서 작성 지시자인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2015. 7. 28. 보고한 것이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청와대 설득의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를 제시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을 대표적 협력 사례로 들고 있는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이 그대로 삽입되어 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 11. 19.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의 경우에는 사법부의 협력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을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전교조 대법원의 파기환송결정에도 불구하고 2015. 11. 16. 서울고등법원(환송심)에서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이 다시 인용된 이후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 문건에서 계속 언급하였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고 김형근 교사 사건은 동일하게 사법부의 정부운영 협력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 **3. 사법농단의 실태 - 김영한 비망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가. 김영한 비망록에서 확인되는 전교조 탄압 및 재판개입**

2014. 6. 14. 시작해서 2015. 1. 9. 끝나는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이하 ‘김영한 비망록’)을 보면 초기 기록에서부터 전교조에 대한 언급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1심 본안 판결 선고 이전부터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었다.

<p>Note Date 6/19 ① [redacted] ② 노조 전임자 - (6/19) 2.9.2014 기록 ✓ 노조 전임자 기록 ✓ (노조 전임자 기록) 예기 (YSO) 노조 전임자 (제3차 개입 금지) 인사상 부가상. 노조 전임자 기록 노조 전임자 기록 - YS 시점 기록 기록 기록</p>	<p>2014. 6. 15.(일) 김영한 비망록 장(長)</p> <p>② 전교조 재판 - 6/19 재판 중요 승소시 강력한 집행 (전교조) 교육감 비협조 예상 YS때 노동법 개정(제3자 개입 금지) 오세용. 부의장. 노조 명당성당 점거 재판 집행 철저히 - YS 시절 잘못 교훈 삼아 의지. 수석, 관계부처 - 독려</p>
--	--

2014. 6. 19. 법외노조 사건 1심 본안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 김영한 비망록의 내용은 행정부처의 대응으로 현실화되었다. 2015. 6. 20.자 비망록에는 “교육부 전교조 관련 공문 시행, 복직명령, 직무이행명령”이라고 대응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교육부는 2014. 6. 20.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휴직허가를 취소하며 복직명령을 내리고 전교조에게 지원하던 사무실에서 퇴거하거나 사무실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pan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vertical-align: middle;">교육부</span>	<h1 style="margin: 0;">보도자료</h1> <p style="margin: 0;">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p>
---	--

[자료문의] ☎ 044-203-6464 교원복지연수과 과장 이용학, 사무관 김규호

교육부,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 노조전임자 업무 복직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월 20일(금)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2014. 6. 19., 서울행정법원) 결과(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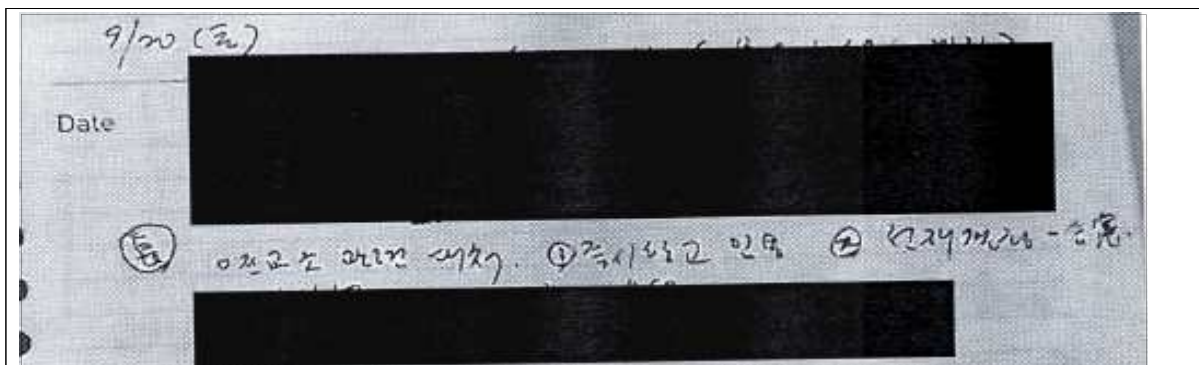


이후로도 청와대가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메모를 여러 날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4. 6. 20.자 비망록을 보면, 행정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외 단체 및 국회의 법 개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2014. 6. 20.(금) 김영한 비망록</p> <p>○ 전교조-고용부에 조치토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LO, OECD에 외무부 통하여 취지 전달토록</li> <li>- 교원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원칙(原則) 고수토록 독려</li> <li>- 전교조 투쟁 일정 : 6/27(금) 상경투쟁, 7/12(토) 전국교사대회</li> </ul> <p>장(長)</p> <p>○ 전교조 지지 교육감 다수 갈등 예견</p> <p>*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항 : 半합법, 비합법 혼합 강력한 의지로 법집행.</li> </ul> <p>전교조 생존 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연계 정부 압박.</li> </ul> <p>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엠네스티, ILO, 대사들로 숙지토록</p>
--	--

2014. 6. 25.자 비망록에는 “전교조 대응 방안 - 6/26(목) 대검 공대협”라는 메모가 등장한다. 실제 2014. 6. 26.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법외노조화에 항의하는 전교조 조퇴투쟁에 대하여 엄정대처를 천명하였다. 2014. 7. 1.자 비망록에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 복귀 조치 우선적으로 단행 - 형사고발”이라고 기재하여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탄압을 지시하고 있으며, 2014. 7. 5.자 비망록에는 각 시·도 교육청의 전임자 복귀명령 여부와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여부를 확인하며 “자금 추적 요원 파견 필요”라고 적고 있다. 2014. 7. 15.자 비망록에는 “미복귀자는 직권면직”, 2014. 8. 2.자 비망록에는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 직무이행명령, 교육부장관 직권면직 대(代)집행”, 2014. 8. 9.자 비망록에는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 - 교직 박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1심 본안 판결 이후 후속조치를 매우 꼼꼼히 챙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9. 19. 항소심 단계에서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이 인용(2차 효력정지 결정)되어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실행하기 어려워지자, 청와대의 대응은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로까지 나아간다. 2차 효력정지 결정 바로 다음날인 2014. 9. 20.자 김영한 비망록에는 “전교조 관련 대처 ①즉시항고 인용 ② 현재결정 - 합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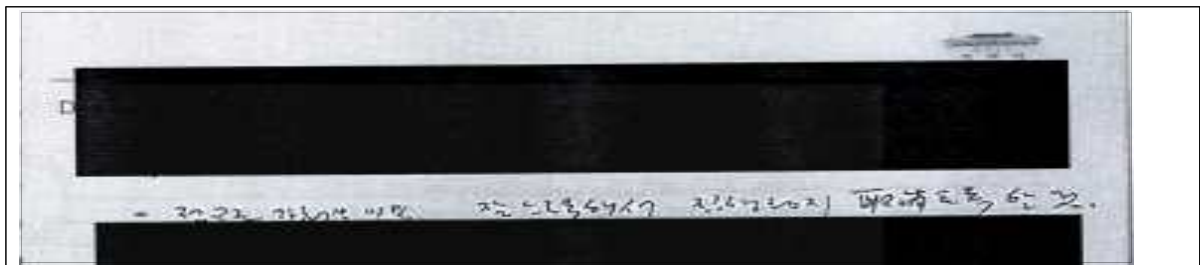


2014. 9. 20.(토) 김영한 비망록

장(長) ○ 전교조 관련 대처. ① 즉시항고 인용, ② 현재결정 - 합헌(合憲)

이 시기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항고 이전으로, ▲ ‘즉시항고’란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 ‘헌재결정’이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재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청와대는 법외노조 사건 재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4. 9. 22.자 비망록에서 청와대의 재판개입 의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효력정지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관련하여 ‘공대협(공안대책협의회)’에 대응을 주문하는 문구와 함께 “전교조 가치분 인용 -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이라는 문구가 발견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다.



2014. 9. 22.(월) 김영한 비망록

전교조 가치분 인용 -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

이후 실제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항고는 2015. 6. 2. 대법원에서 인용되었으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5. 28.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나. 김영한 비망록에 조응하는 법원행정처 시나리오 및 실제 결과

김영한 비망록에서 효력정지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문구가 등장한 이후부터 (2014. 9. 22.) 대법원의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2015. 6. 2.), 법원행정처는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에 관한 문건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낸다.

2014. 12. 13. 작성·보고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151]’라는 문건이 대표적이다. 이 문건은 재항고 인용결정(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이 결국 BH와 대법원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재항고심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장(민중기 수석부장판사)이 교체된 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의 효력정지 사건에 대한 결론이 항소심 본안 판결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5. 2. 8. 작성·보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2015. 3. 12. 작성·보고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204, 205, 295, 296]’, 2015. 4. 12. 작성·보고된 “성완중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152, 300, 304]’에서는 청와대의 관심사건인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항고심의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청와대와의 협상 카드로 제시한다.

위 문건의 검토대로 대법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재항고를 인용하여 효력정지 파기환송결정(2015. 6. 2.)을 한 이후에는, 이 대법원 결정을 사법부가 정부 운영에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열거하며 상고법원을 추진을 위한 설득방안으로 내세웠다(2015. 7. 27.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 [70]’, 2015. 7. 28. 작성·보고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80]’, 2015. 7. 31. 작성·보고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재판을 대가로 이득을 얻겠다는 ‘재판거래’를 실제로 기획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사법부가 BH에 대하여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상고법원 입안을 위하여 이 ‘이니셔티브’를 가감 없이 활용했다.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재항고 인용이 BH와 대법원 양측 모두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전제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5. 5. 28.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불과 5일 만인 2015. 6. 2. 재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정식으로 접수되기도 전에 미리 재항고 신청부터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51] 문건의 내용과 같이 범외노조 사건 본안 2심에서도 전교조가 패소하였고, 특히 종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했던 민중기 재판장이 황병하 재판장으로 교체된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장 교체와 본안 사건의 결정 시점도 [151] 문건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민중기 당시 수석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 노동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노동법 전문가였으며, 전교조의 1심 단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 2013루1179 결정의 재판장으로, 대법원의 시나리오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법관인사이동’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에 법원 행정처가 가장 손쉽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한 개입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별조사단도 인정하고 있듯, 전교조 범외노조 사건의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보고한 것은 그 실행 여부를 떠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저버리고 청와대와 적절하지 못한 유대·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문건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동일하게 실현되었고, 다시 법원행정처는 범외노조 효력정지 사건에 관한 대법원 결정을 정부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거래는 실제 실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 문건의 내용은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이라는 등의 김영한 비망록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교조 탄압을 추진하는 정부에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4. 조사보고서의 한계와 추가수사 필요성

특별조사단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과 관련하여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의 재항고인용의 결론이 있게 되면 후에 대법원의 본안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론이 유지될 것으로 함부로 관측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검토가 실행 여부를 떠나 검토 그 자체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분석하였다(3차 보고서 175 내지 176쪽).

그러나 3차 보고서는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여(조사보고서 183쪽 참조),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고 막연히 의도가 없음을 예단하고 있다. 재항고 사건의 내용, 재판부 구성 등 사건과 직접 관련된 문건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하여 관련자와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냈어야 한다.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문건 작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후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퍼즐을 맞추듯 밝혀냈어야 한다.

실제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하기도 전에 미리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원원하는 결과’로서 ‘재항고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실행에 옮겼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임종헌은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문건 작성을 정다주 심의관에게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이는 양승태의 사전 지시 내지 적어도 사후 승인을 거쳤을 것이다. 또한 양승태, 임종헌, 정다주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법관의 재판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따라서 양승태, 임종헌, 정다주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청와대, 그리고 재판부와 어떤 의사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철저히하고도 독립적인, 납득할만한 조사가 필요하다.